

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2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1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11. 26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주민생활과장 정영량)

가. 제정이유

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(법률 제20415호, 2024. 3. 26. 공포, 2026. 3. 27. 시행)에 따라 고성군 관내 보건 의료,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, 장애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·협력을 강화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2)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·시행, 통합지원 사업 추진(안 제4조, 안 제5조)
- 3)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의 구성·운영(안 제6조, 안 제7조)
- 4)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(안 제8조, 안 제9조)
- 5)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, 교육 및 홍보(안 제10조, 안 제13조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가)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) 「사회보장기본법」

다)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- 라) 「지역보건법」
- 마) 「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
- 바) 「고성군 포상 조례」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9445(2025. 10. 16.)호]
- 4) 기 타
 - 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1596호
 - 예고기간: 2025. 10. 10.~2025. 10. 30.(20일간)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라) 신구조문 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 - 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개정 목적

본 제정조례안은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·돌봄·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·지원하는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4조~제6조)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등에 관한 지역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업추진과 통합지원 제공 근거 마련
- (안 제7조~제12조)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협의체의 설치,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0조의 위임 내용을 반영함

○ 종합 검토 의견

본 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앞서 법령에서 위임한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과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차원에서 법률의 원활한 이행과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며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1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